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대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강대호, 노식래 의원 (2명)

찬 성 자 : 최영주, 김태수, 이동현, 송정빈,
송아량, 이정인, 박기재, 이영실,
우형찬, 정재웅, 박상구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을 축소(85㎡→60㎡)하고,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건축법」이 개정(2019.4.23.)됨에 따라 이를 「서울시 건축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을 기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축소함.(안 제45조 제1항)
- 나.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(최대 5회) 규정을 폐지함.(안 제45조제3항)

다. 공개공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리와 관련한 조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치함.(안 제26조제6항 신설)

라.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개정조문은 건축법[법률 제16380호]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.(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.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설치 및 관리”를 “설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(안내도 포함)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2.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3.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·관리하여야 하며,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85제곱미터”를 “60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건축법[법률 제16380호, 2019. 4.23., 일부개정]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공개 공지 등의 확보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<u>설치 및 관리</u>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(안내도 포함)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<u>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,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9. <u>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을 확인·관리하는 경우,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</u></p>	<p>제26조(공개 공지 등의 확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설치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6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연
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
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
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
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
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
다.

1.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
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
치기준에 따라 안내판(안내도
포함)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
야 한다.

2.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
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
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
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3.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
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·관
리하여야 하며, 2년에 1회 이
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
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
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5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--
--- 60제곱미터 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.

다만,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 있다. <단서 삭제>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